

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25 |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<br><b>검 토 보 고 서</b>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8. 21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8. 21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9. 9.(수)

## 2. 제안이유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만기 도래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을 변경하고, 교통과 「주차장 특별회계」 여유재원 전입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실제 발생이자 수입 및 지출 편성

나. 「주차장 특별회계」 여유재원 1,500,000천원 예수금 수입 편성

다. 기금조성액

(단위: 천원)

| 구분     | 2025년도 말<br>조성액(A) | 2026년도 조성계획 |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6년말<br>조성액(A+D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수입(B)       | 지출(C)     | 증감<br>(D=B-C) |                    |
| 기정(당초) | 3,383,127          | 73,990      | 3,064,500 | △2,990,510    | 392,617            |
| 변경(안)  | 3,383,127          | 1,539,162   | 3,029,700 | △1,490,538    | 1,892,589          |

- (수입) 타회계 전입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

## ○ (지출)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→ 일반회계로 상환

## 라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| 항 목 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| 기정액       | 증 감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| 4,922,289 | 3,457,117 | 1,465,172 |
| (216-01) 공공예금이자수입 | 39,162    | 73,990    | △34,828   |
| (722-01) 예수금 수입   | 1,500,000 | 0         | 1,500,000 |
| (714-01) 예치금 회수   | 3,383,127 | 3,383,127 | 0         |

## ○ 공공예금이자수입 (73,990천원 → 39,162천원)

- 일반회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

## ○ 예수금수입 (0원 → 1,500,000천원)

- 「주차장 특별회계」 전입재원 1,500,000천원 전액 예수금수입 편성

## 마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| 항 목     |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| 기정액       | 증 감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계       |                  | 4,922,289 | 3,457,117 | 1,465,172 |
| 통합계정    | (602-01) 일반예치금   | 1,500,000 | 0         | 1,500,000 |
|         | (705-01) 예수금원금상환 | 3,000,000 | 3,000,000 | 0         |
|         | (705-02) 예수금이자상환 | 29,700    | 64,500    | △34,800   |
| 재정안정화계정 | (602-01) 일반예치금   | 392,589   | 392,617   | △28       |

## ○ 통합계정 일반예치금 (0원 → 1,500,000천원)

- 「주차장 특별회계」 전입재원 전액 일반예치금 편성

## ○ 통합계정 예수금이자상환 (64,500천원 → 29,700천원)

- 일반회계 조기상환으로 인한 발생이자 감소에 따른 변경

## ○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 (392,617천원 → 392,589천원)

- 정기예금 만기 시 발생이자 감소에 따른 변경

## 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만기 도래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을 변경하고 「주차장 특별회계」 여유재원 전입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.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